

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」 개정내용 알림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-1415호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(2019.10.04. 공고) [2020.01.01. 시행예정]

<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 >

□ (개념)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(패시브), 신재생에너지 생산(액티브)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최소화

패시브(Passive)

냉·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
(단열·기밀성능 강화 등)

+

액티브(Active)

신재생에너지 생산
(태양광, 지열 등)

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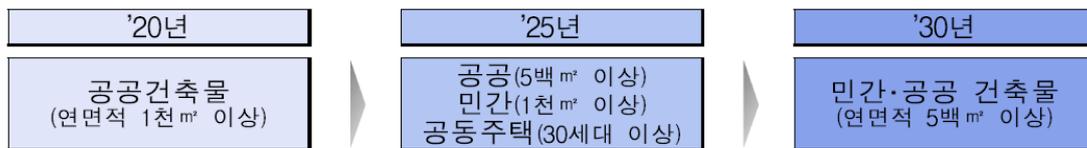
**제로에너지건축
(Zero Energy Building)**

□ (인증제도) 에너지효율등급 1⁺⁺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(BEMS 등)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

에너지효율등급	에너지자립률*	제로에너지등급
1 ⁺⁺ 등급* 이상 (최고1 ⁺⁺⁺ ~최저7등급) *최저 7등급 대비 80% 절감	100% 이상인 건축물	1등급
	80 이상 ~ 100% 미만인 건축물	2등급
	60 이상 ~ 80% 미만인 건축물	3등급
	40 이상 ~ 60% 미만인 건축물	4등급
	20 이상 ~ 40% 미만인 건축물	5등급

* (에너지자립률) : 1차에너지 생산량 / 1차에너지 소비량(소요량+생산량)

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



■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

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, 재축, 별도 증축하는 경우 5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(단, 공동주택은 제외)

<인증대상 공공기관>
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
- 연구기관 및 연구회 (정부출연연구기관 등)
-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- 병원 (국립대학병원, 국립대학치과병원,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)
-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(고등교육법)
- 시도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)

■ 제로에너지건축물 FAQ (「2019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설명회」 책자에서 발췌)

Q.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소비가 '0' 인 건축물인가?

A.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각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정의에 따라 'NET 제로에너지건축물' 과 'nearly 제로에너지건축물'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'NET 제로에너지건축물' 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. 에너지자립 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에너지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비율에 따라서 평가하며, '**NET 제로에너지건축물**' 및 '**nearly 제로에너지건축물**' 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Q. 종전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?

A. **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**은 설계단계에서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, 기계, 전기, 신재생 부분의 40여가지 항목들을 **에너지성능지표(EPI)**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. **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**는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준공단계까지 ISO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한 **1차에너지소요량**으로 고효율 건축물을 인증하고 있습니다.

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건축의 지향점으로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**1차에너지소요량(1++등급 이상), 에너지자립률 20%이상,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**의 설치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.

Q.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가?

A. **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**(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기준이 적용되므로, 설계 및 발주 진행 중인 기관에서는 해당 일정을 유념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
Q.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가 있는지?

A.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건축기준 완화 : **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** 등 건축기준 최대 15% 완화

인증등급	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	비 고
ZEB 1	15%	에너지자립률 100% 이상
ZEB 2	14%	80%이상 ~ 100%미만
ZEB 3	13%	60%이상 ~ 80%미만
ZEB 4	12%	40%이상 ~ 60%미만
ZEB 5	11%	20%이상 ~ 40%미만

-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
- 주택도시시기금 대출한도 확대
-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
- 세제 혜택 : 취득세 15%~20% 감면

(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**개정안 원문**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